

##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65
----------	------

제출연월일 : 2016. 9. 12.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토록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요인을 차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신설 및 기능 개정(안 제5조)
- 위원회 구성, 회의운영 및 서면심의(안 제5조의2 ~ 제6조의2)
- 심의위원 비공식 개별접촉 금지 및 위촉 해제(안 제6조의3 ~ 제6조의5)
- 운영세칙,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 ~ 제20조)
- 동의서 및 서약서 별지서식 신설(안 별지 서식1, 별지 서식2)

### 3.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2장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반영(의견서 붙임 참조)
  - 제5조의2(위원회 구성)제8항에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신설
- 라. 입법예고 : 2016. 7. 18. ~ 2016. 8. 8.(의견 없음)
- 마.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울산광역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5조의2의 제목 “(해축 및 직무)”를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산업·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관계 공무원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상임위 소속의원은 제외한다.)

⑤ 구성된 위원의 명단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⑥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총임기는 6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⑧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6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주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상정 안건이 있을 시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최일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많거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⑧ 위원의 회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서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회는 최초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⑩ 위원회 상정 안건의 처리기한은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서면심의회) ①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서면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되 전자우편,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서면심의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준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3(접촉금지) ① 위원은 심의(자문, 재심의 포함) 안건 배포날부터 심의 개최 시 까지 지적사항 보완·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 및 관계자와 접촉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 접촉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원 위촉 해제, 구 홈페이지 명단 공개, 구 소관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제6조의4(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으로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계속해서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4. 제6조의6제1항에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

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중 “제113조제6항”을 “제113조의2”로 하고, “1년”를 “6개월”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기획단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필요시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제19조(기획단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임기제 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을 둔다.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20조(기획단 운영)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기획단장이 관장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과 기획단 소속 공무원의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제5항의 규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총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임기와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신·구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능) 법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위원회에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li> <li>2.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li> <li>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안하는 사항</li> </ol>	<p>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li> <li>2. 울산광역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li> <li>3.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li> <li>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li> </ol>
<p>제5조의2(해촉 및 직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이 사망한 때</li> <li>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li> <li>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li> </ol>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p>	<p>제5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산업·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li> <li>2. 관계 공무원</li> </ol>

무를 대행한다.

〈신 설〉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상임위 소속의원은 제외한다.)

⑤ 구성된 위원의 명단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⑥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총임기는 6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⑧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주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상정 안건이 있을 시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최일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많거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

<신 설>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⑧ 위원의 회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서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회는 최초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⑩ 위원회 상정 안건의 처리기한은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서면심의회) ①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서면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되 전자우편,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서면심의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준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3(접촉금지) ① 위원은 심의(자문, 재심의 포함) 안건 배포날부터 심의 개최

<신 설>

시 까지 지적사항 보완·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 및 관계자와 접촉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 접촉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원 위촉 해제, 구 홈페이지 명단 공개, 구 소관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제6조의4(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신 설>

제10조(회의록) ①(생략)

②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113조제6항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으로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 설>

-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계속해서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 4. 제6조의6제1항에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록) ①(현행과 같음)

②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113조의2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기획단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

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필요시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신 설>

<신 설>

	<p><u>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u></p> <p><u>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u></p> <p><u>제19조(기획단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임기제 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을 둔다.</u></p> <p><u>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u></p> <p><u>제20조(기획단 운영)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기획단장이 관장한다.</u></p> <p><u>② 기획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u></p> <p><u>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과 기획단 소속 공무원의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u></p>
--	---

【별지 서식1】

# 동 의 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에 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임기 2년, 201 . . . ~ 201 . . . )됨을 동의합니다.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근 무 처 :  
직 위 :  
E - Mail :  
전 화 : (자 택) (직 장)  
(휴대폰)  
팩 스 :

201 . . . .

위 원 :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서식2】

# 서 약 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원회의 자문·심의과정 또는 기타 직무수행상 지득한 사항을 위원 재직시는 물론 해촉된 이후에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

근 무 처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의안심사보고서

## (의안번호 1265)

1. 의안명 :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9. 2.(금)
- 제출자 : 중구청장
- 위원회회부 : 2016. 9. 13.(화)
- 위원회심사 : 2016. 9. 22.(목)

###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이근배 건설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토록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요인을 차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위원회 설치 신설 및 기능 개정(안 제5조)
- 위원회 설치 신설 및 기능 개정(안 제5조)
- 심의위원 비공식 개별접촉 금지 및 위촉 해제(안 제6조의3 ~ 제6조의5)
- 운영세칙,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 ~ 제20조)
- 동의서 및 서약서 별지서식 신설(안 별지 서식1, 별지 서식2)

### 4.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2장

### 5.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익희)

-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정해짐에 따라 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과정의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고 공정한 심의를 유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